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
조례안』에 대한

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조례 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,

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운동부 육성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

으로 하는바, 이를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